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곽향기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698
----------	------

발 의 년 월 일: 2024년 04월 03일

발 의 자: 곽향기, 김경훈, 김길영, 김영철, 김용일, 김지향, 김춘곤, 김형재, 김혜영, 남창진, 민병주, 박성연, 박춘선, 신동원, 윤기섭, 윤영희, 이병운, 이봉준, 이숙자, 이영실, 이은림, 이희원, 임춘대, 정준호, 최민규, 허훈, 홍국표 의원(27명)

1. 제안이유

- 서울시는 「동행매력 정원도시 서울」을 선포하고 정원문화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정원의 효과는 다양한 연구를 통해 검증되어 도시화, 개인화, 초고령화 해결책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도시지역 아파트 주거문화 특성상 정원에서 누리는 여가문화활동의 기회는 매우 제한적임. 이에 민간정원을 조성, 공개할 때 필요 경비 일부를 지원토록 하여 민간정원 조성 및 공개를 장려하여 시민들이 정원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민간정원을 등록하여 공개하는 경우 보존 가치가 있는 정원 내 식물의 보존·증식과 시설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함(안 제10조의 2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

다. 기타 : 신 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시장은 민간정원을 등록하여 공개하는 경우 보존가치가 있는 정원 내 식물의 보존·증식과 시설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민간정원의 개방) (생 략) <u><신 설></u>	제10조(민간정원의 개방)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② 시장은 민간정원을 등록하여 공개하는 경우 보존가치가 있는 정원 내 식물의 보존·증식과 시 설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를 지원할 수 있다.</u>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0조(민간정원의 개방)제2항을 신설함에 따라 관련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제3조제2항)
-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0조(민간정원의 개방)제2항을 신설함에 따라 관련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담당 부서 확인 결과 지원 대상 및 규모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 희 선
추계세제팀장	이 정 수
추계분석관	김 지 혜

☎ 02-2180-7953
e-mail : kjh0123@seoul.go.kr